

1.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며,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금영수증 포함 사항 명확화(안 제19조의3)

기부법인 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주요 사항,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단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를 추가로 포함할수 있음을 규정함

나.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42조의6)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회생계획등을 이행하기 위해 이행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0.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4항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을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기부금영수증 등) 영 제3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등의 소재지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이하 이 조에서 “단체명등”이라 하며,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3.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의3제1항 단서 중 “세무법인·회계법인”을 “세무법인·회계법인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
으로, “법인설립등기일”을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을
“(세무법인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세무법인등)”으로 한다.

제5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매출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8호 중 “(갑)(을)”을 “(갑)
(을)(병)”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의3 중 “영 제39조제4항”을 “제19
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10 중 “여부 점검결과”를 “여부”로 하
며, 같은 항 제3호의15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의3 중 “영 제86조의2
제9항”을 “영 제86조의3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4 및 제4호의5
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영 제86조의2제9항”을 “영 제86
조3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의3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9의7. 영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6호서식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5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병)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부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부표2,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15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의5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별지 제75호의3서식, 별지 제76호의5서식,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18서식, 별지 제76호의19서식,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별지 제76호의2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7항제4호의4호 및 제4호의5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영수증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 법 제75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로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를 포함한 기부금영수증은 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제5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

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소재지					
②법인명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연도		⑥전화번호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⑦과세표준					
⑧산출세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2.2/10,000)				
⑨가산세액					
⑩총부담세액					
⑪기납부세액					
⑫차감납부할세액					
⑬분납할세액					
⑭차감납부세액					
⑮총당후납부세액					
⑯국세환급금 총당신청	환급법인세				
	총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⑧·⑫소계란 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⑩총부담세액란: ⑧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가산세액(⑨)은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⑬분납할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4. ⑮충당 후 납부세액란: ⑭차감납부세액에서 ⑮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⑯국세환급금 총당 신청란: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총당하려는 금액(⑯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⑭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사업 연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거법조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세액
세 액 감 면	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 외	110		
	⑩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9		
	⑩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08		
	⑩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109		
	⑩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⑩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⑩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⑩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⑩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⑩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⑩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⑩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⑩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⑩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⑩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⑩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⑩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⑩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⑩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⑩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2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173		
	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⑩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⑩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제1항제1·3·5호	197		
	⑩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제1항제2·4·6호	198		
	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⑩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⑩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⑩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⑩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17A		
	⑩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	17B		
	⑩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C		
	⑩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17D		
세 액 공 제	⑬ 소 계		170		
	⑬ 외국인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⑬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⑬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D		
	⑬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⑬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⑬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⑬ 상가임대료를 인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10B		
	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10C		
소 계	⑬ 소 계		180		
	⑮ 합 계(⑬ + ⑭)		1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세 액 감 면	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항	111		
	㉒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㉓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㉕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㉖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㉗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㉘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㉙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13B		
	㉚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㉛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㉝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㉞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㉟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㊱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㊲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㊳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㊴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㊵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㊶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3P		
	㊷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3Q		
	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3·5호	13R		
	㊹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3S		
	㊺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3T		
	㊻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3U		
	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2항	13V		
	㊽ 소 계		130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액
세 액 공 제	188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189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1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	14M			
	189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2항	18D			
	189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	18L			
	189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189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E			
	189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189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189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189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189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189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189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189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189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189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189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189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189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200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20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200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20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200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200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14X			
	200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18J			
	20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200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200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200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200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8K			
	20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200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20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20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200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20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200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20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200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200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중 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2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223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22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225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18M			
	226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18N			
	226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18P			
	228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18Q			
	228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W			
	231 소 계		149			
231 합 계 (188 + 231)			150			
232 공제감면세액 총계 (150 + 231)			151			

233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234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	189			

작성방법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3. ㉑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㉑ 최저한세 적용제의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㉑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㉑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㉒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㉒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㉓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㉓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㉓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㉔, ㉕ 또는 ㉖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㉗, ㉘ 또는 ㉙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㉔, ㉕ 또는 ㉖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구공제감면코드:132)
9.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10. ㉚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사업명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근거법조항	계산기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세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투자금액 × 1(2,3,5,10)/100	131		
상생결체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015%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자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출연금 × 10/100	14M		
합동·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1(3,7)/100	18L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항 제2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 × 3-4(8,10,15,20,25,30)/100 또는 '14.1.1.~'14.12.31.: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항 제2호	'15.1.1. 이후: 발생액 × 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0D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항 제3호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30(40,50)/100	16B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항 제3호	'18.1.1. 이후: 발생액 × 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25(40,50)/100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항 제3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1.1. 이후: 발생액 × 20(30)/100	10E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항 제3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21.7.1. 이후: 발생액 × 30(40)/100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22.1.1. 이전 지급분: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22.1.1. 이후 지급분: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5/100	18H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 제1호	'14.1.1.~'15.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5,10)/100 '16.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6)/100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4.1.1.~'15.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전환 중인 경우 '16.12.31.까지 중전을 적용) '16.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3(5,10)/100	14A		6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취득금액 × 3(5,10)/100	142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1.1.~'14.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5,10)/100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1.1.~'14.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7)/100 '15.1.1.~'16.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7,10)/100 '17.1.1.~'18.12.31. 투자분: 투자금액 × 2(5,10)/100 '19.1.1.~'20.12.31. 투자분: 투자금액 × 2(5,10)/100 '21.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2.1.1.~'13.12.31. 투자금액 × {기본공제(3~4%) + 추가공제(2~3%)} '14.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2~4%) + 추가공제(3~4%)} (한도: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0~3%) + 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4N		
신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기업(중견15)/100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기업(중견15)/100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기업(중견15)/100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기업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창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창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21.12.31.~'22.12.31.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5백만원(1천3백만원)	18F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기업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창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의 100% 창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 75%)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기업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 50%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 시 2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3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75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 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 × 3/100(중소기업은 5/100)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 3/100(중소기업은 5/100) *법인세 10% 한도	14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㉑ 구 분	근거법 조 항	㉒ 계 산 기 준	코드	㉓ 계산명 세	㉔ 공제대상 액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1.1.~'12.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16.12.31.: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1.1.~'19.12.31.: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1%, 수요자 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1.1.~'22.12.31.: 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가해지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캐럽등 사업자의 수입금 액증기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 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 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 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산업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기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200만원 한도)	10C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8N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건7%, 중소10%)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선결제금액 × 1%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기본공제: 투자금액 × 1(중건3, 중소10)/100 신성장·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건5, 중소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6(중건8, 중소16)/100 추가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3/100(국가전략기술 4/100) (기본공제 200% 한도)	13W		
합		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㉕ 구분	㉖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㉗ 계	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㉙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㉚ 공제세액 (㉚-㉚-㉚)	㉛ 소멸	㉜ 이월액 (㉕+㉕-㉚-㉚)
		㉗ 당기 분	㉘ 이월 분	㉙ 당기 분	㉚ 1차연도	㉚ 2차연도	㉚ 3차연도	㉚ 4차연도	㉚ 5차연도						
					㉚ 6차연도	㉚ 7차연도	㉚ 8차연도	㉚ 9차연도	㉚ 10차연도						
	소계														
	소계														
합 계										※					

작성방법

- ㉕ 구분란에는 앞쪽의 코드를 적습니다.
- ㉖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 ㉗ 당기분란에는 ㉙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 ㉘ 이월분란에는 ㉕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㉚ 이월액을 적습니다.
- ㉙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㉕란-㉚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㉘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㉙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㉚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사 업 연 도	. . . ~	가 산 세 액 계 산 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수입금액		7(3.5)/10,000	3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 15.1.1.개시	
		수입금액		60(30)/100	80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4(7)/10,000	32		
		수입금액		10/100	3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 15.1.1.개시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2.2/10,000	4		
지출증명서류		미(누락)수취금액		2/100	8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상증법 §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법인세법 § 75의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25 (12.5) / 10,000	96		
		불분명 등		25/10,000	97		
	소계					11	
	주식 등 변동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소 계					15		
주주 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위 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 자 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5(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3(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계			20		
기 본 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신용 카드 영수 증	소 계	계			26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20(10)/100	98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 수		2,000 (1,000)	77		
유보소득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	79		
중간에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수입금액		2/10,000	99		
업무용승용차		미제출		1/100	100		
관련비용 명세서		불성실		1/100	101		
합 계					2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43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공제감면세액		40/100	72			
(일수) 미납세액	()	2.2/10,000	5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65			
합 계			5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① 구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수입금액		7(3.5)/10,000	84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수입금액		14(7)/10,000	86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부정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89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2.2/10,000	90
합 계				91		

법정납부기한
(. . .)

납부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⑧×(⑩/⑨))	⑮ 부정 (⑧×(⑪/⑨))	⑯ 부정 (국제거래) (⑧×(⑫/⑨))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작성 방법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에 적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⑯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⑭, ⑮, ⑯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에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5)3/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의국법인의 해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에 적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⑭란, ⑮란 및 ⑯란에 각각 적습니다.
- 중간에납부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사 업 연 도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구 ①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소 득 금 액)	비 고
비과세 ⑤	10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19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별지 제6호서식 ⑩란 해당 금액
	10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 13 조 의 4	62Q	()	
	103		606		
소득세 ⑥	104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105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10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 104 조 의 31	62R	()	
	107		458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⑧	108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109 해외자원개발배당 감면	제22조	103		
	110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111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11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19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113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 62 조 제 4 항	13F		
	114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115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116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 85 조 의 6	11M		
	11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118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1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120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12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제3호·제5호	197		
	122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제4호·제6호	198		
	1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12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125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 121 조 의 22	17A		
	126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 121 조 의 22	17B		
	127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 121 조 의 22	13H		
	128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 121 조 의 22	13V		
	12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130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13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 121 조 의 17 제 1 항 제 1 호 · 제 3 호 · 제 5 호	13R		
	132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1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134		164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 드	④ 감 면 세 액 (소 득 금 액)	비 고
⑨ 세 액 공 제	㉓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I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㉔ 상생결재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㉖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㉗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㉘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㉙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㉚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㉛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㉝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㉞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㉟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㊱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㊲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㊳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㊵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㊶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㊷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㊸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㊹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㊺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㊻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㊽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㊾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㊿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㉑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한장훈연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㉒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㉓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㉔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㉕ 금사업자와 스크랩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㉖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 104조 의 30	18M		
	㉗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 104조 의 32	10C		
	㉘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 13조 의 3제 1항	18N		
	㉙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 13조 의 3제 3항	18P		
	㉚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㉛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W		
	㉝		165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 (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합 계			합 계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⑨ 공제세액	비 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140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0B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8Q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 계			

작성 방법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⑪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⑪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 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작성 방법

1. 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계산결과 익금 및 손금 조정사항과 기타 익금 및 손금조정사항을 적어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근거를 첨부합니다. 다만,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 표에서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①, ④과목란은 간단 명료하게 회계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손금산입 유형을 요약 하여 적습니다.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 으로 ①란에 적고,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지분가액 한도내 결손금)' 과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으로 구분하여 ④란에 적습니다.
3. ③, ⑥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 상여, 유보,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기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임시유보, 출자의 증가, 이전소득 배당으로 구분하여 적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③, ⑥코드란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한 상여 100, 배당 200, 기타 소득 300, 유보 400, 기타 사외유출 500, 기타 600으로 적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의한 임시유보 700, 출자의 증가 820, 이전소득 배당 810으로 적으며,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경우 유보(△유보) 100, 기타 200으로 적습니다.
 - 나.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③, ⑥처분란에 '기타' 로 적습니다.
4. ②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와 ⑤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㉔, ㉕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사 업 연 도	. . .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I.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	1. 자 본 금	01					
	2. 자 본 잉 여 금	02					
	3. 자 본 조 정	15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5. 이 익 잉 여 금	14					
		17					
	6. 계	20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병) 계		21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8. 법 인 세	22					
	9. 지 방 소 득 세	23					
	10. 계 (8+9)	30					
11. 차 가 감 계(6+7-10)		31					

II.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⑥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발 생 액			⑩ 소급 공제	⑪ 차감계	⑫ 기공제액	⑬ 당기 공제액	⑭ 보전	⑮ 계	⑯ 기한 내	⑰ 기한 경과	⑱ 계
	⑦계	⑧일반 결손금	⑨배 분 한도초과 결손금 (⑨=⑤)									
계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⑰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⑳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㉑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 과 결 손 금	㉒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결 손 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㉓ 합 계 (㉓=㉕+㉖)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㉔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㉔일반결손금으로 계상) (㉔≥㉒의 경우는 "0", ㉔<㉒의 경우는 ㉒-㉔)	
					㉕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㉖ 이월결손금 (㉕=㉑) 과㉒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		

III.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㉗과목 또는 사항	㉘ 코드	㉙전기말 잔액	기초잔액 수정		㉚수정후 기초잔액 (㉙+㉛-㉜)	㉛비 고
			㉛증가	㉜감소		

작성 방법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작성방법 3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⑫란의 수정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
- 나. 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 다. 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라.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병)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과 (병)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바.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 사. 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병) 계의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 가. ⑧일반 이월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⑤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 다. ⑩「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 라. 감소내역란의 ⑫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 마. 감소내역란의 ⑬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⑩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바. ⑭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 사. ⑮계란: 이월결손금 ⑪차감 계에서 ⑬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 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아. ⑯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자. ⑰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 차. ⑱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을 적습니다.
- 카. ⑳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⑩란 음수(△)금액을 적습니다.
- 타. ㉑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파. ㉒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㉑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㉒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하. ㉓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㉒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㉑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㉒란에서 ㉑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

- ㉗~㉚ 해당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작성 방법

1. 본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세무조정 출자의 증가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 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합니다.
2. ①은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
3. ②는 해외현지기업의 법인명을 기입합니다.
4. ③ 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출자의증가 소득을 기입합니다.
5. ④ 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출자의증가 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⑤ 당기중 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 출자의증가로 처분된 금액을 기입하고 손금가산 출자의증가 분은 △표시 기입합니다.
7. ⑥ 기말잔액란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출자의증가 소득을 기입합니다.
8. 합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병) 계에 (을) 서식의 합계액과 합산하여 적습니다.
9. ⑦ 증감사유를 기재합니다. (ex.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출자의증가)를 수령하는 경우,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 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 합 여 부	④ 적 정 여 부																								
중	⑩ 사업요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비율 코드</th> <th>사 업 수입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업태별</td> <td></td> <td></td> <td></td> </tr> <tr> <td>(01)</td> <td>()업</td> <td>(04)</td> <td>(07)</td> </tr> <tr> <td>(02)</td> <td>()업</td> <td>(05)</td> <td>(08)</td> </tr> <tr> <td>(03)</td> <td>그 밖의 사업</td> <td>(06)</td> <td>(09)</td>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업태별				(01)	()업	(04)	(07)	(02)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7) 적 합 (Y) 부적합 (N)	(26)
	구분	기준	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업태별																													
	(01)	()업	(04)	(07)																										
	(02)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⑪ 규모요건	○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 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적 (Y)																								
⑫ 독립성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 -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⑩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부 (N)																								
⑬ 유예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⑭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⑩)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⑫)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⑮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적 (Y) 부 (N)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 합 여 부	④ 적 정 여 부
중 견 기 업	㉞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㉞)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 (Y) 부 (N)
	㉞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닐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㉞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1천5백만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만원 미만	(억원)	(억원)	(억원)	(억원)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만원 미만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소재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인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자소득금액계			
	⑨준비금손금산입액			
	⑩기부금손금산입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⑧-⑨-⑩-⑪)			
	⑬비과세소득			
	⑭과세표준(⑫-⑬)			
세액의 계산	⑮세율			
	⑯산출세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2.2/10,000)	
	⑰납부지연가산세액			
	⑱가감계(⑯+⑰)			
	기납부 세액	⑲중간예납세액		
		⑳원천납부세액		
		㉑()세액		
		㉒계(⑲+⑳+㉑)		
	(세액, 미납일수, 세율)		(, , 2.2/10,000)	
	㉓추가납부세액			
	㉔차감납부할세액 (⑱-㉒+㉓)			
	㉕분납할세액			
㉖차감납부할세액(㉔-㉕)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㉗예입처	은행 (분)지점
	㉘예금종류	예금
	㉙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⑥이자소득금액계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⑱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⑩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⑫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을 적습니다.
3. ⑩기부금손금산입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과 별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내의 금액 등[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⑫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⑪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해당연도에 손금 산입되는 금액{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⑭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⑯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⑯세율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적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7. ⑰납부지연가산세액란: 법인세의 경우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56호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⑳추가납부세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⑱란의 금액} 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9. ㉑분납할세액란: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가 산 세 액 계 산 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2.2/10,000	4	
기타					63	
합 계					21	

법정납부기한
(. .)

납부일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⑧×(⑩/⑨))	⑮ 부정 (⑧×(⑪/⑨))	⑯ 부정(국제거래) (⑧×(⑫/⑨))
이자소득	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와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⑯)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기타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① 신고인 (양도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연도				전화번호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② 양수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도소득금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④+⑤-⑥-⑦)											
⑨ 세율											
⑩ 산출세액											
⑪ 감면세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신고불성실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납부지연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기장불성실 등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계										
⑯ 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 자진납부할 세액 (⑩-⑪-⑫-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 자진납부세액											
⑳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㉑ 법인세감면세액											
㉒ 세율											
㉓ 산출세액											
㉔ 수정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일수)										
㉕ 기신고·결정·경정세액											
㉖ 자진납부할 세액											
㉗ 분납할 세액											
㉘ 자진납부세액											
㉙ 환급세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⑳금 융 기 관 명											
㉑ 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예정·수정)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이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 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⑦양도소득기분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 ⑩산출세액·⑪감면세액·⑫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세액감면방식)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9.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 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납부지연가산세[1월 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3. ⑰납부할세액란부터 ⑳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4. 환급금 계좌신고(㉕·㉖)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5. 과세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 제1항에 열거된 자산을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 세 율 구 분 (코 드)	합 계	(-)	(-)	(-)
② 소 재 지				
③ 자 산 종 류 (코 드)		()	()	()
거래일자 ④ 양도일자(원인)		()	()	()
(거래원인) ⑤ 취득일자(원인)		()	()	()
거래자산 ⑥ 총 면 적 토 지 (양도지분) 건 물		(/)	(/)	(/)
		(/)	(/)	(/)
면적(㎡) ⑦ 양도면적 토 지 건 물				
⑧ 취득면적 토 지 건 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 양 도 가 액				
	⑩ 취 득 가 액				
	취 득 가 액 종 류				
⑪ 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 기 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 체 양 도 차 익				
	비 과 세 양 도 차 익				
	⑬ 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⑭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⑮ 양 도 소 득 금 액					
감 면 소 득 ⑯ 세 액 감 면 대 상					
금 액 ⑰ 소 득 금 액 감 면 대 상					
⑱ 감 면 종 류	감 면 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⑲ 건물	일 반 건 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㉑ 건물	일 반 건 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㉒ 토 지	합 계					

작성 방법

1. ①세율구분란: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소재지 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외)	비사업용 토지과다 보유법인 주식		
	국내	국외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1세대 2주택 (부수토지 포함)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부수토지 포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수 30이상인 경우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지정 지역 10% 가산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A	B
									A	B	A	B	A	B								
코드	1	2	코드	10	15	20	10	10	25	10	28	10	26	10	30	11	10	15	20	10	27	10

※ A: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B: '09.3.16~'13.12.31 양도분

2. ③자산종류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3.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양도면적란: ⑥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가.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제 소요된 가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라.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 × [취득시기기준시가(②+②①)/양도시기기준시가(⑬+⑬①)]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질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음

7.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8. ⑫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을 적고, 취득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9.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 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하고, 3년 이상 거주 12%(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1세대1주택 외	' 20.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 '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10. ⑮세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⑰소득금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⑱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⑲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3. ⑳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㉑건물란: ⑱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15. ㉒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 인 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법 인 구 분	1.내국 2.외국 3.외투	⑦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영리법인	30	73	83	93	당기순이익 과세
		비영리법인	60	74	84	94	
⑧ 소재지							
⑨ 업 태			⑩ 종 목				
⑪ 주업종코드							
⑫ 사 업 연 도			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	개월	⑭ 예납기간		
⑮ 수 입 금 액			⑯ 신고일				
⑰ 신고납부 구분	1. 정기 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세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법인세법」 제63 조의2제1항제1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⑩ 산 출 세 액	01		
			⑪ 공 제 감 면 세 액	02		
			⑫ 가 산 세 액	03		
			⑬ 확정세액(⑩-⑪+⑫)	04		
			⑭ 수 시 부 과 세 액	05		
			⑮ 원 천 납 부 세 액	06		
			⑯ 차감 세액(⑬-⑭-⑮)	07		
	⑰ 중 간 예 납 세 액 [⑯ × $\frac{6}{\text{직전 사업연도 월수}}$]			09		
	⑱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1		
	⑲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⑰-⑱)			12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13	(, , 2.2/10,000)		
⑳ 가 산 세 액						
㉑ 납 부 할 세 액 계(⑲+㉑)			14			
㉒ 분 납 세 액			15			
㉓ 납 부 세 액(㉒-㉓)			16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법인세법」 제63 조의2제1항제2호)	㉔ 과 세 표 준		31			
	㉕ 세 율		32			
	㉖ 산 출 세 액		33			
	㉗ 공 제 감 면 세 액		34			
	㉘ 가 산 세 액		42			
	㉙ 수 시 부 과 세 액		35			
	㉚ 원 천 납 부 세 액		36			
	㉛ 중 간 예 납 세 액(㉖-㉗+㉘-㉙-㉚)		37			
	㉜ 납 부 할 세 액 계(㉛)		39			
	㉝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43			
㉞ 분 납 세 액		40				
㉟ 납 부 세 액(㉞-㉟)		41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 표준재무상태표, 2. 표준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
-------	---

작성 방법

1. ⑫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 업태·⑩ 종목: 주된 업태·종목을 적습니다.
4. ⑮ 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적용 법인
 - 가. ⑩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⑮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 나. ⑩ 공제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 다. 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라. ⑩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2.2/10,000[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적용 법인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붙임 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 · ·	가 산 세 액 계 산 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법 인 명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신고	일 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부 당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 15.1.1.개 시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과소 신고	일 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 당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 15.1.1.개 시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납부세액		60(30)/100	81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2.2/10,000	4		(일수) 미납세액	()	2.2/10,000	51	
기타							합 계			53	
합 계					21		법정납부기한 (. .)				
							납부일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 과소신고 납부세액	⑬ 과세표준 금액	과소신고납부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⑪ 부당 (국세 거래)			⑭ 계	⑮ 일반 [⑫ × (⑨/⑬)]	⑯ 부당 [⑫ × (⑩/⑬)]	⑰ 부당(국세 거래) [⑫ × (⑪/⑬)]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작성 방법

1.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 계를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 부당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여 ⑬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⑫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에 곱하여 ⑭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⑮), 부당과소(⑯), 부당과소(국제거래)(⑰)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4. 기타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	--

기부금영수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2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지점명*)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지점소재지)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 기부내용

코드	구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용			금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㉔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각 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각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장학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2. ㉕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㉖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50

4. ㉗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 시가)	Max(장부가액, 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5. (유의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 및 제11조의2에 따른 전자기부금을 말함)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지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⑨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㉓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㉔ 지출월	㉕ 국가명	㉖ 지급목적	㉗ 지급건수	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㉙ 금액
㉚ 연도별	㉛ 국가명	㉜ 지급목적	㉝ 수혜인원	㉞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㉟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제출인: _____ 년 월 일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작성 방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⑩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⑭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⑲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⑲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㉑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㉒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⑨ 의무	⑩ 의무이행 여부
⑦법인령 §39①호 바목의 공익법인	(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정관의 내용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⑧법인령 §39①가 바목의 공익법인	(라) 공익법인등이 실제운영상 (가) 의무를 이행할 것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바)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마목의 종교단체는 제외)의 공익법인 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업 태 · 종 목	
소 재 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 손 사 업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결 손 사 업 연 도	⑥결손금액		
결 손 금 액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④직 전 사 업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	⑧과세표준		
	⑨세 율		
	⑩산출세액		
	⑪공제감면세액		
	⑫차감세액 (⑩ - ⑪)		
⑤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 (⑬ = ⑩)		
	⑭차감할 세액 [(⑧ - ⑦) × 세율] [⑭ ≥ (⑩ - ⑫)]		
	⑮환급신청세액 (⑬ - ⑭) (⑮ ≤ ⑫)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⑯예 입 처	은행 (본) 지점
	⑰예 금 종 류	
	⑱계 좌 번 호	예 금

「법인세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인)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⑥결손금액란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 : 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 :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⑨·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⑩산출세액란 : 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 :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⑩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⑭차감할 세액란
 - 가. 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 나.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⑯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외국법인연락사무소현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1. 기본사항

①상호(법인명)	②고유번호	③국적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⑦대표자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대표자국적	⑩휴대전화	
외국본점	⑪법인명	⑫주업종
	⑬소재지	⑭자본금(\$, 기타)

2. 임차 현황 (단위: m², 원)

⑮면적	⑯보증금	⑰월세 (부가세포함)	임대인 인적사항
			⑱법인명(성명) ⑲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직원 현황 (단위: 명, 원)

직원 수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		국외에서 지급한 급여		⑳가입한 납세조합
㉑계 (㉑+㉒)	㉑내국인	㉑외국인	㉓인원	㉔지급총액	㉕인원	㉖지급총액	

4. 운영자금 현황 (단위: 원)

조달내역				지출내역			
㉘계 (㉘+㉙+㉚)	㉙본사	㉚관계회사	㉛기타	㉜계 (㉜+㉝+㉞)	㉝급여	㉞임차료	㉟기타

5.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현황 (단위: 원)

㉞거래금액 합계	주요 국내 거래처 현황					
	㉟상호	㊱사업자등록번호	㊲소재지	㊳거래구분	㊴주요품목	㊵거래금액
				매출[] 매입[]		
				매출[] 매입[]		

6. 본점의 국내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단위: 원, %)

㊶구분	㊷상호	㊸사업자등록번호	㊹소재지	㊺투자금액	㊻지분율	㊼업종
국내투자법인[] 지점[] 기타[]						
국내투자법인[] 지점[] 기타[]						
국내투자법인[] 지점[] 기타[]						

7. 적격증명(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등) 수취금액

(단위:

원)

합 계	매입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 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	

8. 주요업무내용

첨부서류(해당 내용 표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서류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없 음

작성 방법

- ※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작성하며, 신고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 “1. 기본사항”에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및 외국법인 본점의 현황을 적습니다.
 - 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⑧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⑭ :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연간 근로(일용근로)소득으로서 연락사무소가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⑮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으로서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⑰ : 국외근로소득(⑮)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납세조합명을 적습니다.
 - “4. 운영자금 현황”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 연락사무소의 자금운영에 관한 내역을 적습니다.
 - “5.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현황”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 외국법인 본점의 전체 국내거래금액 합계 및 주요 거래처의 기본현황과 거래내역에 대하여 적습니다.
 - ⑳ : 외국법인 본점이 신고대상기간 동안 국내거래처와의 연간 총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 ㉑ : 외국법인 본점을 기준으로 매출, 매입 해당여부를 []에 √표를 합니다.
 - ㉒ :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재화, 기술, 용역제공 등으로 적습니다.
 - ㉓ : 다음 구분에 따라 []에 √표를 합니다.
 - 가. 국내투자법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법인을 말합니다.
 - 나. 지점 :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을 말합니다.
 - ㉔, ㉕ : ㉓의 구분이 국내투자법인인 경우 해당 투자금액, 지분율을 적습니다.
 14. 적격증명(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란 :
 - 가. 신고대상기간의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으며,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분을 적습니다.
 15. “8. 주요업무내용”에는 연락사무소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예: 업무연락, 시장조사, 자료수집 등)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해당되는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유형	☐ 법인, ☐ 연금, ☐ 기금, ☐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조세조약 관련 규정:) ☐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감 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 ☐ 기타()		
② 법인명		⑥ 주소	
③ 대표자 성명		⑦ 거주지국	
④ 납세자번호		⑧ 국가코드	
⑤ 설립 연월일		⑨ 전화번호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_____ 간의 조세조약	제 _____ 조 제 _____ 항 제 _____ 호 _____ 소득 세율 _____ %
	제 _____ 조 제 _____ 항 제 _____ 호 _____ 소득 세율 _____ %
	제 _____ 조 제 _____ 항 제 _____ 호 _____ 소득 세율 _____ %

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 ⑪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 아니오 ☐
- ⑫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 아니오 ☐
- 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⑭ ⑬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예 ☐ , 아니오 ☐
- ⑮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예 ☐ , 아니오 ☐
- ⑯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 , 아니오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2) 신청인은 위 ⑪ ~ ⑭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⑪ ~ ⑫의 연금, 기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금, 기금 등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할 필요없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3) 신청인은 위 ⑮에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또는 위 ⑯에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붙임 서류	⑪, ⑫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대리인	⑰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⑳ 주소 또는 소재지	⑱ 성명 또는 법인명 ⑲ 사업자(주인)등록번호

작성 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거주지국,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유형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유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인 경우에는 연금, 기금 란에 '√' 표시를 하고,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지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며 ()안에 해당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을 적습니다.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지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등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며 ()안에 그 유형을 적습니다.
3. ②법인명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4. ③대표자 성명 란에 외국인인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5. ④납세자번호 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설립 연월일에는 신청인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7. ⑥주소 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8. ⑦거주지국 및 ⑧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전화번호 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⑩란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그리고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11. ⑪~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지구가 설립된 계약상대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12. ⑬~⑭란에서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지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⑮의 질문에서 아니오에 √ 표시한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⑯의 질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신청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조약상 혜택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합니다. 만약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⑰~⑳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붙임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지구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	------

- ※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란에 적습니다.
- []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 []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

①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설립 연월일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설립지국	⑧ 국가코드		
⑨ 유형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2.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기준일: 년 월 일]

⑩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⑬ 일반 투자자 수	⑭ 국외투자기구 수
	⑪ 금액(단위:)	⑫ 비율(%)		
⑮ 합계		100%		

본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의4·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38조의7에 따라 제출하는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붙임 서류	1. 국외투자기구의 설립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 2. 국외투자기구의 설립·운영 및 투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등)		
	⑯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⑰ 주소 또는 소재지	⑰ 성명 또는 법인명	⑱ 사업자(주인)등록번호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이며, 접수번호 및 접수일시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서식을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에 적는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설립지국, 유형,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이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인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설립 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설립지국란과 ⑧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유형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 표시를 합니다.

10. ⑩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11. ⑬ 일반 투자자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수를 적습니다.

12. ⑭ 국외투자기구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하나의 투자자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3. ⑯~⑲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4.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지급자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번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2 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총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영리 일반	영리 외투	신탁 재산	비영 리	국 가 지방자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점 (국내사업장)	연 락 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분할전 사업자등록번호	분할연월일
조합법인 해당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법인과세 신탁재산		공 익 법 인				외국 · 외투 법인		국 적	투자비율
여	부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부				여	부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에 한함)

법 인 명(상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4.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 국 법 인 내 용				
본점	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관 리 책 임 자				
성 명 호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5.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이버물 명칭		사이버물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m²	m²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 ~ 20 . .				원		원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 · 허가 사업 여부					
제 조	판 매	장 소	유통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 · 허가	기타
					여	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해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시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금액**은 반드시 신고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인적사항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구분	☐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류	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통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신탁 계약서(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전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작성 방법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합 계 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공익법인등)	① 법인명(단체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⑪ 기부자	⑧ 합 계		⑨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전 법정기부금)		⑩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전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개 인						
합 계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출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⑩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⑨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종전 법정기부금

⑩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종전 지정기부금
4.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 결 모 법 인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인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전자우편주소
	⑦ 소재지	

⑧ 연결사업연도	· · · ~ · · ·	⑨ 법인종류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기업			⑩ 조정구분	1.외부, 2.자 기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⑪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

⑫ 신고일	⑬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	⑭ 사업연도의제	1.여, 2.부
-------	-------------	---------	-----------	----------	----------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 계
⑮ 연 결 수 입 금 액	()			
⑯ (연 결) 과 세 표 준				
⑰ 연 결 산 출 세 액				
⑱ 총 부 담 세 액				
⑲ 기 납 부 세 액				
⑳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구 분	현금납부	물 납		합 계
㉑ 분 납 할 세 액				
㉒ 차 감 납 부 세 액				

⑳ 조 정 반 번 호		㉕ 조정자	성 명			
㉔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	㉖ 예입처	은행 (본)지점	㉗ 예금종류	예금	㉘ 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 고 안 내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붙임 서류	1.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	수수료 없 음
	2.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3.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① 사업자등록번호란, ② 법인등록번호란, ③ 법인명란, ④ 전화번호란, ⑤ 대표자성명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 연결사업연도란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⑩ 조정구분란, ⑪ 신고구분란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⑨ 법인종류별구분: '중소기업' 과 '중견기업' 은 연결법인 중소기업등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 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5. ⑬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6. ⑭ 사업연도의제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1.여"에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부"에 "○"표시합니다.
7. ⑮ 연결수입금액란은 연결법인들의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76호의22서식) ⑮ 수입금액란의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8. ⑯ 연결과세표준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서식 ⑮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⑰ 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⑮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⑱ 총부담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⑭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⑳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㉑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㉒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㉓ 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㉔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㉓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㉕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⑱ 총부담세액에서 ㉓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㉖ 분납할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㉗ 분납할세액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㉘ 차감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㉕ 차감납부세액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㉙ 조정반번호란에는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6. ㉚ 조정자관리번호, ㉛ 조정자란에는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7. ㉜ 예입처, ㉝ 예금종류, ㉞ 계좌번호란에는 국세환급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8.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①구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	⑥가산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수입금액		7(3.5)/10,000	3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수입금액		14(7)/10,000	32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23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2.2/10,000	4	
중간에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합 계					21	
⑦ 법정납부기한			⑧ 납부일			

2.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⑨ 연결법인명	합 계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가산세	⑫ 토지등 양도소득					
	⑬ 지출증빙 등					
	⑭ 미환류소득 가산세					
	⑮ 합 계					

3. 연결집단 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

구분		⑯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⑰ 계	⑱ 일반	⑲ 부정	㉑ 부정 (국제거래)	㉒ 계	㉓ 일반 (⑱×(⑲/⑰))	㉔ 부정 (⑲×(⑲/⑰))	㉕ 부정(국제 거래) (⑱×(㉒/⑰))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									

작성 방법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⑮), 부정과소(⑯) 및 부정(국제거래)⑳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⑰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⑱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㉒), 부정과소(㉓) 및 부정(국제거래)㉔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⑫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76호의17서식(을)]의 ⑥ 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⑬ 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 서식의 지출증빙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2.2/10,000	5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 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6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5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수입금액		7(3.5)/10,000	84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수입금액		14(7)/10,000	86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89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2.2/10,000	90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9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상증법 §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법인세법 § 75조의7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96	
		불분명등			25/10,000	97	
소 계					11		
주식등 변동상 황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소 계					1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2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위장)수주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5(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3(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가맹일수)수입금액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		20(10)/100	98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분불명금액		5/1,000	79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수		2,000(1,000)	77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금액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수입금액		2/10,000	9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100	
	불성실	불성실금액		1/100	101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66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구분	⑦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납부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정	⑪ 부정(국제거래)	⑫ 계	⑬ 일반(⑦×(⑧/⑧))	⑭ 부정(⑦×(⑩/⑧))	⑮ 부정(국제거래)(⑦×(⑪/⑧))
토지등 양도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작성 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정과소(⑩), 부정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⑦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관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⑬), 부정과소(⑭), 부정과소(국제거래)(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64의3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라.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5.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7.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5(3)/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8.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9.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0.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에 적습니다.

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연결사 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 기 업	⑩ 사업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구분 업태별 (01) ()업 (02) ()업 (03) 그 밖의 사업 계	기준 비율 코드 (04) (05) (06)	사 업 수입금액 (07) (08) (09)	(17) 적 (Y) 부적합 (N)	(26)
	⑪ 규모요건 ○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Y) 부적합 (N)	(Y) 부 (N)
	⑫ 독립성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⑩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Y) 부적합 (N)	
	⑭ 유예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Y) 부적합 (N)	
소 기 업	⑮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⑩)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⑫)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⑯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 매 출 액(14)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적 (Y) 부 (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 정 여부
중 견 기 업	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⑩)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 (Y) 부 (N)
	⑪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 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 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 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은 제외)				(24) (Y), (N)	
	⑫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세특 례제한법」 제5조제1항): 1천6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 기업에 한함)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 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 5천억원 미만	(억원)	(억원)	(억원)	(억원)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3천억원 미만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 결 모 법 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연 결 사 업 연 도	. . . ~ . . .	
	⑤소 재 지					
⑥법 인 구 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취득)	
⑦연 결 법 인 명						
⑧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과 세 표 준						
⑩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2.2/10,000)	(, ,2.2/10,000)	(, ,2.2/10,000)	(, ,2.2/10,000)	
⑪가 산 세 액						
⑫총 부 담 세 액						
⑬기 납 부 세 액						
⑭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⑮분 납 할 세 액						
⑯차 감 납 부 세 액						
⑰총 당 후 납 부 세 액						
⑱국세환급금 총당신청	환 급 법 인 세					
	총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③대표자란, ⑤소재지란 :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④연결사업연도란 :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⑨과세표준란, ⑩산출세액란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⑤소계란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⑫총부담세액란 : ⑩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액(⑪)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가산세액(⑪)은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5. ⑮분납할세액란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⑰총당 후 납부세액란 : ⑯차감납부세액에서 ⑱국세환급금 총당신청란의 총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⑱국세환급금 총당신청란 :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연결집단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총당하려는 금액(⑱총당할 농어촌특별세 ≤ ⑯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① 과세표준		세율	② 세 액
구 분	금 액	20%	
③ 법인세 감면세액			
④			
⑤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⑥ 구 분	⑦ 감 면 내 용	⑧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⑨ 감 면 세 액 (소득금액)	비 고
⑩ 비과세	⑩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별지 제6호서식 ⑩란 해당 금액
	⑩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⑩③		606	()	
⑪ 소득 공제	⑪④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별지 제7호서식 ⑪란 해당 금액
	⑪⑤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⑪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⑪⑦		458	()	
⑫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⑬ 세액 감면	⑬⑧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⑬란 해당 금액
	⑬⑨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⑬⑩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⑬⑪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⑬⑫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⑬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⑬⑭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⑬⑮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⑬⑯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⑬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⑬⑱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⑬⑲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⑬⑳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⑬㉑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제3호·제5호	197		
	⑬㉒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제4호·제6호	198		
	⑬㉓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⑬㉔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⑬㉕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⑬㉖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⑬㉗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⑬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⑬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⑬㉚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⑬㉛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제3호·제5호	13R		
	⑬㉜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⑬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⑬㉞		164		

⑭ 세액 공제	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⑬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⑬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⑬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⑬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⑬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⑬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⑬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⑬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⑬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⑬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⑬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⑬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⑬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⑬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⑬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⑬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환수금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⑬ 금사업자와 스캐럽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⑬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 104조 의 30	18M		
	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 104조 의 32	10C		
	⑬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 13조의3제 1항	18N		
	⑬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 13조의3제 3항	18P		
	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⑬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 24조	13W		
	⑬		165		
⑮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① 과세표준	세율	②세액
구 분	금 액	20%
③ 법인세 감면세액		
④		
⑤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⑥ 구 분	⑦ 감 면 내 용	⑧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 드	⑨ 감 면 세 액 (소 득금액)	비 고
⑩ 비과세	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별지 제6호서식 ⑩란 해당 금액
	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⑩		606	()	
⑪ 소득공제	⑪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별지 제7호서식 ⑪란 해당 금액
	⑪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⑪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⑪		458	()	
⑫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⑬ 세액감면	⑬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⑬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⑬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 제4항	13F		
	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⑬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⑬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제3호·제5호	197		
	⑬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제4호·제6호	198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⑬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제3호·제5호	13R		
	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⑬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⑭세액 공제	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⑬ 대중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⑬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⑭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⑭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⑭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⑭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⑭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⑭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⑭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⑭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⑭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⑭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⑭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⑭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⑭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⑭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⑭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⑭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⑭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⑭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⑭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⑭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⑭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⑭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⑭ 석유제품 전 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⑭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⑭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 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⑭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⑭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 104 조 의 32	10C		
	⑭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⑭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⑭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⑭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⑭ 통합투자세액공제	제 24 조	13W		
	⑭		165		
⑮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 ③ 법인세 감면세액란: ⑮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⑫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⑨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⑩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⑪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 그 밖에 ⑩ 비과세, ⑪ 소득공제, ⑬ 세액감면, ⑭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놓여진 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 결 법 인 모 법 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신고 구분		1. 정기신고, 2. 기한 후 신고			⑦ 신고일						
⑧ 연결사업연도		. . . ~ . . .			⑨ 예납기간		. . . ~ . . .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		중소 기업 30	일반기업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	1. 유, 2. 무				
			중견 기업 73	상호출자 제한기업 83	그외 기업 93						
⑫ 연결법인 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⑬ 법인종류별 구분(⑪번 "1. 유" 해당 시)		개별법인 계산방식				중소, 일반	중소, 일반	중소, 일반			
⑭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						연결법인 계산방식	연결납세 계산방식	개별, 연결	개별, 연결	개별, 연결	개별, 연결
⑮ 연결법인명											
⑯ 사업자등록번호											
⑰ 직전 사업연도 월수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⑱ 수입금액							
직 전 사 업 연 도	직 전 법 사 업 연 도 세	⑲ 연결산출세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⑳ 공제감면세액					
		㉑ 가산세액					
		㉒ 확 정 세 액 (⑲-⑳+㉑)					
		㉓ 수시부과세액					
법 인 세	연 도 세	㉔ 원천납부세액					
		㉕ 차 감 세 액 (㉒-㉓-㉔)					
		㉖ 중간예납세액 [㉕×(6÷직전사업연도월수)]					
		㉗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㉘ 차감중간예납세액 (㉖-㉗)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2.2/10,000)	(, ,2.2/10,000)	(, ,2.2/10,000)	(, ,2.2/10,000)
기 준	기 준	㉙ 가산세액					
		㉚ 납 부 할 세 액 계 (㉘+㉙)					
		㉛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㉜ 법인세율					
		㉝ 연결산출세액					
계 산	산	㉞ 연 결 세 율 (㉝÷㉛)					
		㉟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㉛×㉞)					
		㊱ 공제감면세액					
		㊲ 가산세액					
		㊳ 원천납부세액					
기 준	준	㊴ 중 간 예 납 세 액 (㉟-㊱+㊲-㊳)					
		㊵ 납 부 할 세 액 계 (㊴)					
		㊶ 납 부 할 세 액 계 (㊵+㉚)					
		㊷ 분 납 세 액					
		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합 계	합 계	㊹ 납 부 세 액 계 (㊶-㊷-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호 적용 시		수수료 없음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란, ③ 대표자 성명란, ④ 전화번호란, ⑤ 소재지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신고 구분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⑧ 연결사업연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4. ⑨ 예납기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5.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 '중소기업' 과 '중견기업' 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 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6.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이 "2.일반"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1.유"에 "○"표 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2.무"에 "○"표 합니다.
7. ⑬ 법인종류별 구분(⑪번 "1.유" 해당 시)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중소" 또는 "일반"에 "○"표 합니다.(⑪번 "1.무"에 "○"표 한 법인은 적지 않음)
8. ⑭ 중간예납세액방법 구분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연결납세 계산방식)하는 경우 "연결"에 "○"표 하고,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개별법인 계산방식)하는 경우에는 "개별"에 "○"표 합니다.
9. ⑰ 직전 사업연도 월수란: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10. ⑱ 수입금액란: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1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 법인
 - 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거나,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 나. ⑲ 연결산출세액(또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⑮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 다. ⑳ 공제감면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 라. ㉑ 수시부과세액란, ㉒ 원천납부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수시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 마. ㉓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㉒)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바. ㉔ 가산세액란: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다음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사. ㉕ 납부할 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2. 자기계산기준 해당 법인
 - 가. 「법인세법」 제76조의1제1항제2호 또는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 나.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 다. ㉖ 법인세율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계"의 "연결납세 계산방식"란에만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13. ㉗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⑭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란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법인은 ㉑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서 ㉒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4. ㉘ 납부할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5. ㉙ 납부할 세액 계란: "연결납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6. 연결집단 분납세액(㉚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⑩ 법인종류별(연결집단)란의 "1. 중소기업"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며, "2. 일반"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 ③ (생 략)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이 지정기간이 경 과한 후에도 공익법인등으로 지 정받기 위해서는 <u>영 제36조제1 항제1호바목</u>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 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 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 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④ ----- ----- ----- ----- ----- <u>영 제39조제1항 제1호바목</u> ----- -----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9조의3(기부금영수증 등) 영 제3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이 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u> <u>1. 기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등의 소재지</u> <u>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 체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소재지(이하 이</u>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에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② (생략)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97조의3제1항에 따

조에서 “단체명등”이라 하며,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 기부
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지
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의 단
체명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3.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
한 주식의 시가) ① -----

----- . 다만, 영 제10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인이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회생계획 등을 이행
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

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회계법인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조정반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illegible]

----- 세무법인 · 회계
법인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
한) ·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
등”이라 한다)-----

--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 설립인가일)---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_____

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④ (생략)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 ⑨ (생략)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 ⑤ (생략)

<신설>

----- (세무법인 등의 -----

④ (현행과 같음)

⑤ ----- (세무법인 등-----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

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
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매출
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
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 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 10. (생략)

11. 영 제94조의2제7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접투자
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

[illegible]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서

12. ~ 47. (생 략)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
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49. ~ 58.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삭 제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등에 관련한 서
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2. (생 략)

3의3.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3의4. ~ 3의8. (생 략)

3의9. 삭 제

3의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공익
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
과 보고서

3의11. ~ 3의14. (생 략)

3의15. 영 제97조의4제5항에 따
른 별지 제63호의15서식의 성
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3의16. · 4. (생 략)

12. ~ 47. (현행과 같음)

48. -----
-----(갑)(을)
(병)

49. ~ 5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⑦-----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19조의3-----

3의4. ~ 3의8. (현행과 같음)

3의10. -----

----- 여부 -----

3의11. ~ 3의14. (현행과 같음)
<삭 제>

3의16. · 4. (현행과 같음)

4의2. 삭 제	
4의3. <u>영 제86조의2제9항</u> 단서 및 영 제120조의4제3항에 따 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 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 자 과세여부 확인서	4의3. <u>영 제86조의3제9항</u> ----- ----- ----- -----
4의4. <u>영 제94조의2제5항에 따 른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집 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 세액 확인서</u>	<삭 제>
4의5. <u>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 른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외 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u>	<삭 제>
4의6. ~ 9. (생 략)	4의6. ~ 9. (현행과 같음)
9의2. <u>영 제86조의2제9항</u> 및 영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 청서	9의2. <u>영 제86조3제9항</u> ----- ----- --
9의3. ~ 9의6. (생 략)	9의3. ~ 9의6.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7. <u>영 제133조의2제3항에 따 른 별지 제71호의6호서식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 고서</u>
10. ~ 13의2. (생 략)	10. ~ 13의2. (현행과 같음)
13의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13의3. ----- -----

기부금 영수증 <u>발급명세서</u> 14. ~ 16. (생략) ⑧ ~ ⑳ (생략)	----- <u>발급합계표</u> 14. ~ 16. (현행과 같음) ⑧ ~ ⑳ (현행과 같음)
---	---